『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1명

2. 찬 성 자 : 강승수 의원 외 9인

3. 제안이유

○ 중증장애를 가진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, 이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강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

○ 지원신청 및 처리(안 제3조)

○ 지원범위(안 제4조)

○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◆ 중증장애를 가진 구미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, 장애로 인한 의정활동 제약을 해소하고

정치적 참여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안으로써,

○ 검토 결과,

-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한 합리적 지원으로서, 헌법상 평등원칙 및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함.
- 중증장애의원 1인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범위로 판단됨. 또한, 임기제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둔 점은 예산 상황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보임.
- 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의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의정활동 보조인력 인건비 및 시설 보강 등 예산 수반 요인이 있으므로, 향후 예산 편성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·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